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서미화·장철민·정을호

박지원 · 김남희 · 황운하

강선우 · 김정호 · 강훈식

모경종 • 신장식 • 전용기

김한규・김 윤・서삼석

이정헌 · 서영석 · 김원이

염태영 · 김준혁 · 김민석

용혜인 • 윤종오 • 전진숙

백승아 · 이강일 · 정혜경

전종덕 의원(28인)

제안이유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 1)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하여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 2)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특성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나.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안 제7 조 등)
 - 1) 혼재되어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 2) 계획에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의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 수립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함.
 - 3)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당사자·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게 하고자함.
- 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안 제11조 등)
 - 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 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체계적 형태로 설치하고자 함.
 - 2) 국가, 광역, 기초 단위의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뿐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관장하여 공백을 최소 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라.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관련 기준 추가 및 인증 체계화(안 제15조등)
 - 1)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시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교통

약자를 고려해 읽기 쉬운 표지, 시·청각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국 토교통부가 관련 서비스의 전면 보급을 위해 교재 등을 개발하게 함.

- 2) 시설 및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운영 및 지정하게 함.
- 마.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교육(안 제26조 등)
 - 1)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범위를 도시철도, 궤도운송, 해운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함.
 - 2)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교육 시 서비스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인 권 및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함.
 - 3) 국토교통부가 교육 여부 및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함.
- 바. 버스 및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안 제6장제1절)
 - 1)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시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승하차 지원 및 적재물 제거 등의 내용을 명시함.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버스(시외·고속버스 포함)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 도입하고 유예 시 개선 및 대안마련 기간을 명시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시하여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함.
- 사. 철도, 항공, 해운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안 제6장제2절)
 - 1) 교통약자의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 이용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기존 법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좌석 및 전용구역 확보, 승강장까지의 이동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 설치 등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함.
 - 2) 해운, 항공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비용 필요 시 국토 교통부에서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종류별 목적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 시의 이동지원 명기 (안 제38조)
 - 1)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이동서비스 지원차량, 단순이동 지원차량의 종류별 정의와 이용자를 구분함.
 - 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등록 및 배차 등의역할을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기함.
 - 3)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상시운행 및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함.
- 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 명시(안 제49

조)

- 1)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수단 주차 시 점자보도 블록, 진로 등을 확보하고자 함.
- 2)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 발생 시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자 함.
- 차. 법률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정비(안 제57조 등)
 - 1) 법 미이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관리, 교통수단 이용 등관련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 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 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아.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 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 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 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를 제외한 광역교통시설
- 마.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 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 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 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8. "이동편의서비스"란 목적지 도착 및 승하차 지원, 탑승 대기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 9.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란 보행 불편, 정보 접근, 행동 문제 등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며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받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행하거나 이용 요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차량 또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

는 경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 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통수단을 개발·연구·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연구·제작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의원,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 니터링 및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제7조(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3. 보행환경 실태
 -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및 도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 및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사항
 - 8. 점자안내판 설치, 문자 또는 수어 표시 지원, 이해하기 쉬운 표지 제공 등 교통 정보 접근에 관한 사항

- 9.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교통수단 이용 및 기술 활용한 교통 정보 접근 향상에 관한 사항
- 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광역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계획을 제 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 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시·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광역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군·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구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시 · 군 · 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전원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저상버스 도입 및 예외노선 관련 지방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기초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제11조(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서비스 점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 하 "국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자 등록· 차량 배차 위한 국가교 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 운영
 - 2. 교통사업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 자료 개발
 - 3.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 4.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인증 절차 운영
 - 5.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와 교통 정보 체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공

- 6.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실태 모니터링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개발
- 7. 이동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서비스에 대한 민원 및 차별사례 접수
- 8.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9. 제13조에 따른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센터의 설치·운영 시 관계 전문가 및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센터에 교통약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및 제4항에 따른 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 · 운영 및 운전원 관리

- 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 등록ㆍ차량 배차
- 3.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도 내 교 통인프라 개선
- 4. 교통사업자 및 제27조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점검
- 5.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 6. 휠체어 이용자의 공공 이동 지워 버스 운영
- 7. 제11조에 따른 국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8. 제13조에 따른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시 교통약자, 관계 전문가 및 이동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역센터에 교통약자 관련 위원회를 관련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및 제4항에 따른 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기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도입 · 운영 및 운전원 관리
 -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개선 계획 수립
 - 3.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점검
 - 4. 기존 교통 정보를 점자, 문자 또는 수어로 제공하거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 5. 제11조에 따른 국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6. 제12조에 따른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센터의 설치·운영 시 지역 교통약자, 관계 전문가 및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기초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 제14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교통수단
 - 2. 여객시설
 - 3. 도로
-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치 여부 및 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 을 고려하여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안내시설
 - 가. 안내방송
 - 나. 전자문자 안내판
 - 다. 목적지 표시
 - 라. 시ㆍ청각 및 휠체어 이용자용 버스식별 표시
 - 마. 읽기 쉬운 표지
 - 2. 내부시설

- 가. 휠체어 승강 설비
- 나. 휠체어 보관함
- 다. 교통약자용 좌석
- 라.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 3. 그 밖의 시설
 - 가. 손잡이
 - 나.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다. 출입구 통로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 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야 한다.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승하차 서비스, 읽기 쉬운 표지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자 및 시청각 정보와 읽기 쉬운 표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할 의무가 있는 시· 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 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교통수단 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등의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 등의 인증 업무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 등의 인증 업무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인증 표시 등) ① 제19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9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9 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 제26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운영 과정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2. 교통약자 인권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
 - 3. 성폭력 예방 교육
 - ②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운영 과정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 인권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
 - 2. 성폭력 예방교육
 -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매년 1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7조(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인권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이라하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 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궤도운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운전 자, 이용자 탑승 보조자 및 매표 업무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5. 「해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선장, 해원 등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 실시결 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매년 1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 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인권서

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교재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인권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교통수단 이용 보장 제1절 버스 및 택시

- 제28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

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 4. 교통약자의 탑승 및 하차를 지원하고 승객에게 안내할 것
- 5. 휠체어 탑승공간의 적재물 발생 시 이동시킬 것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가 광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 등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도로의 구조·시설 등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차량 도입을 유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년 내 관련 도로를 개선하거나 우회노선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버스의 교통약자서비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항목의 서비스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정차
 - 2.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위한 경사로 설치
 - 3. 교통약자의 요청 시 휠체어 이동 지원
 - 4. 교통약자의 승하차 지원 및 승객에 대한 안내
 - 5. 휠체어 탑승공간의 적재물 이동 및 좌석 확보 지원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관련 편의 제공
 -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는 장애 등의 이유로 교통약자의 탑승

- 을 거부하거나 무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의 탑승에 적합한 휠체어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택시의 교통약자서비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 제공
 -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 제공
 - 3. 교통약자의 최종 목적지 도착에 필요한 편의 제공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편의 제공
 - ② 택시운송종사자는 장애 등의 이유로 교통약자의 탑승을 거부하 거나 무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철도, 항공, 해운

- 제34조(철도의 이용 보장)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의 운영자는 전체 좌석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휠체어 이용자 전용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 전용좌석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통로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좌석 식별 점자표지,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환승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편의시설은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3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 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의 역사에 교통약자가 지상에 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환승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 치하여야 하며, 관련 편의시설은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④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에 탑승하는 경우 차량과 승강장 간 단차 및 간격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받지 아니 하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철도종사자를 승강장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36조(항공의 이용 보장) ① 「항공안전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항 공운송사업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비행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기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 을 구비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 화면서 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항공안전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 수하 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3호사 목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에 휠체어 이용자의 비행기 접근권 보 장을 위한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와 탑승교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해운의 이용 보장) 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여객선 내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시·청각장에인을 위하여 좌석 식별 점자표지, 화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좌석 및 수하물 처리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무역항 및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휠체어 이용자의 여객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립 장치등의 보조기기와 경사로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등

- 제38조(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종류 및 운행 등) ①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보행에 심한 불편을 느끼며 휠체어 등 이 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 2. 이동서비스 지원차량: 보행은 가능하나 시·청각 등의 정보 접근, 행동 문제 등으로 승하차 및 목적지 도착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차량
 - 3. 단순이동 지원차량: 장거리 거동 불편 및 동반자로 인하여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택시
 - ② 시장·군수는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종류별로 운행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수단 이동지원차량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이 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은 원활한 환승·연계를 위하여 이용자 등록·차량 배차를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 ④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횟수를 정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운 영 목적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보행에 심한 불편을 느끼며 휠체어 등 이 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
- 2. 이동서비스 지원차량: 보행은 가능하나 시·청각 및 문해 등의 정보 접근 제한 및 행동 문제로 승하차 및 목적지 도착 등의 서비 스가 필요한 교통약자
- 3. 단순이동 지원차량: 장거리 거동 불편 및 동반자로 인해 대중교 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
-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응급의료 등 위급한 상황 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운행 및 지원되어야 하며 필요에따라 휠체어 운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예산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도(道)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확보 또는 운행할 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제38조제 1항에 따른 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2/3 이상 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이동지원차량 이용 시 대기시간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차량 한 대당 2.5명 이상의 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조(휠체어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의 서비스 등) ① 제38조제1항 에 따른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의 운수 종사 자는 다음 각 항목의 서비스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 및 편의 제공
 - 2.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정보 전달 및 안내 제공
 - 3. 교통약자의 차량 및 최종 목적지 이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편의 제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차별받을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하여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41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 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휠체어지원차량 및 이동서비스지원차량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 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 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 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 면허효력 정지처분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및「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및 이동서비스 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 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 제43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 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 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44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 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5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44조제1 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 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1. 속도저감시설
 - 2. 횡단시설
 -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46조에 따른 보 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 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48조(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 (이하"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개인형 이동수단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점자보도 및 휠체어 통로 등 교통약자의 진로를 방해되 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업자가 관리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교통약자가 점자보도 및 휠체어 이용자의 통로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이동수단을 주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상해 또는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여야 하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51조(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조사 및 연구

- 제52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 3.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환승 · 연계 체계 구축 현황
 -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5. 보행환경 실태

- 6.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3조(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 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 여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 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 4.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 5.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 6. 보행환경의 개선
 -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55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6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7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위반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8조제7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5.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7.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8.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한 경우
 - 9. 제40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제2장에 따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 제58조(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5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戒告)하여야 한다.
-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 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5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 제60조(벌칙) 제5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 3.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4. 제5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 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 나 이를 훼손한 자
- ③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